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의 건강 증진 지원 시책 마련 근거 신설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44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교원의 건강 증진 지원 시책 마련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2. 26.
3. 회부연월일: 2025.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교원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원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교원의 건강 증진 지원 시책 마련 근거 신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의2(교원의 건강증진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2020년 1,197건, 2023년 5,050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2024년에 816건 감소하였으나 4,234건 수준이며, 이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교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표 1]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활동 침해 건수	1,197	2,269	3,035	5,050	4,234

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자료: 교육부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이 마련될 경우, 해당 시책을 기반으로 교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임.¹⁾

현행법에서 교원의 건강 증진 지원에 대한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 등의 보호조치(제20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등의 지원(제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운영(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음.

1) 「교원지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치료,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제29조의2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를 규정한 「교원지위법」이 2025.9.1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원지위법」(현행)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법률 제20782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학교보건법」은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²⁾

다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에 대해서는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³⁾ 교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학교보건법」에서 건강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대상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하여 규정할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교원의 건강 증진 지원 시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임.

2)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건강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대상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
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140호, 2025.2.13.)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에 교원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존재함. - 최근 개정된 「교원지위법」 역시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29조의2). - 이외에도,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및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원의 마음건강에 대한 폭넓은 보호조치가 시행 중임. -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행 법령·제도가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신중검토 - 이미 여러 법률*에서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의 건강 보호 증진, 건강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교원지위법」(’25.3.18.)이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 개정안과 중복됨. *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7조(건강검사 등),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정신건강복지법」 제2장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등 *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은 교원의 직무전념 여건 조성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모든 교원의 건강 증진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 마련 의무를 「교원지위법」에 규정하는 것은 특별법의 목적·취지·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189